

# 「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」 안내

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한 실직·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

- [1유형] 소득감소 25% 이상, [2유형]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

### ❖ 위기사유

- [1유형] ① (근로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자  
② (자영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(매출)이 25% 이상 감소한 자  
③ '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
- [2유형] ① (근로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 
② (자영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(매출) 감소한 자

-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대도시 6억원 ※ 금융재산, 부채 미적용

- \* 신청 제외 : '20년 1월~9월 중 ①기초생활보장·국가형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② 코로나19피해 지원프로그램(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) 지원 가구 ③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④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참여자(어르신일자리, 자활근로, 공공근로 등)

- 신청 및 접수 : 10. 12.(월) ~ 11. 6.(금),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현장방문

- 지원금액 : 4인 가구 기준 100만원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이상
지급액(원)	400,000	600,000	800,000	1,000,000

- ※ ①[1유형] △ 25% 이상(기존대상) 우선 지급, ②[2유형]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·매출 감소율이 높은순,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

- 지원방법 :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(1회)

- 지원시기 : 신청·접수·조회 완료 후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